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25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관계자·계열사 간 전매 등 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 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용지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안 제13조의3제9호의2)

부도 등 법령에 명시적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택지를 전매할 수 없도록, 현행 ‘계약 후 2년 경과(또는 2년 이내라도 잔금을 완납) 시 공급가격 이하 전매 허용규정’ 삭제

나.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안 제13조의3)

전매가 허용되는 PFV의 요건을,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한 경우로 강화

3. 의견제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044-201-3450, 팩스 044-201-5661)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27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태룡건설(주)(이영남) ② (주)삼안(최동식)

나. 전화번호 : ① 02-2671-8857 ② 02-6488-8012

2. 명칭 : 아스팔트 매트를 이용한 중력식 항만구조물의 마찰력 증대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항만 및 해안 / 항만 및 해안 구조물, 토목 / 항만 및 해안 / 방파제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항만용 중력식 구조물 즉 방파제 및 호안의 안벽 축조시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케이슨 혹은 콘크리트 블록을 해저면에 축조한 사석 마운드 상부에 설치하는 공중에서 중력식 구조물과 사석마운드 사이에 아스팔트 매트를 설치 가능하도록, 마찰계수 0.75이상과 설계기준의 물성치를 만족시키는 아스팔트 혼합물을 인양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중력식 구조물의 제작장에 아스팔트 매트를 설치하는 방법과 설치 완료후 아스팔트 매트가 중력식 구조물과 일체로 거동할수 있도록 설치하여 마찰계수를 0.6에서 0.75로 증대시키는 공법

<범위>

신청기술은 중력식 항만 구조물과 사석마운드 사이의 마찰계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아스팔트 매트를 적용하는 공법으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2017)에 명시된 마찰계수 0.75이상, 압축 및 휨강도 2N/mm²이상, 휨변형량 3mm이상, 비중 2.2이상을 충족하는 아스팔트 매트 혼합물의 배합 및 가열 혼합과 단위중량이 2.2Ton/m³이상의 중량물을 판상형(두께 8~10cm)로 제작하여 인양이 가능하도록 인양력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주름부가 구성된 인양용 연결철물과 보강재를 매립하여 제작하고, 인양시에는 인양철물과 인양고리를 이용하고, 설치 후에는 인양고리를 제거하고 양카철물로 대체하여 중력식 구조물과 일체화가 가능토록 구성을 하였으며, 또한 길이, 폭이 다양한 아스팔트 매트에 대응하여 위치조정이 가능한 브라켓이 달린 조금구를 이용하여 인양·설치하며, 아스팔트 매트 설치과정의 이음부에서 마찰계수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접합 설치하는 방법을 실현한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28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